

주주여러분께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태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3월 27일(금)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21층 회의장
3. 회의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64기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 제2-1호 : 사업목적 정비에 따른 변경의 건
 - 제2-2호 : 액면분할을 위한 액면가액 변경의 건
 - 제2-3호 :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정비의 건
 - 제2-4호 :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
 - 제2-5호 : 중간배당 관련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별첨2]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부의안건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www.hkcosm.com)에 게재하였으며, 당사의 본점 및 지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3월 17일 9시 ~ 2026년 3월 26일 17시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배부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주)한국화장품제조

대표이사 이 용 준

직인
생략

[별첨 1]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 사업목적 정비에 따른 변경의 건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품 제조 판매업 2. 의약품 등 제조 판매업 3.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매매 임대업 4. 초자용기 및 동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5. 각종 작물의 재배, 수집, 가공 및 판매업(인삼,담배,대마,앵속중묘 제외) 6.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7. 관광업 8. 미용업 9. 건설업 10. 결혼식장업 11. 생활용품(비누,칫솔,세제포함)의 제조 판매업 12. 사설 미용학원 설치운영 13. 식품(다류,건강기능식품 포함)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4. 의류제조 판매업 15. 정보통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16. 운동설비 운영업 17.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사업 18.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 가공매매 19.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 20. 교육서비스 사업 및 교육관련 학 	<p>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좌 동) 5. ~ 7. (삭 제) 5. 미용업 9. ~ 10. (삭 제) 6. 생활용품(비누,칫솔,세제포함)의 제조 판매업 12. (삭 제) 7. 식품(다류,건강기능식품 포함)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4. ~ 16. (삭 제) 8.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사업 9.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 가공매매 10.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 11. 교육서비스 사업 및 교육관련 학 	<p>- 기존 영위사업과 관련된 사업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관 정비</p> <p>- 미영위 사업목적 정비</p> <p>- 사업목적 일부 추가 및 삭제에 따른 형식적 조문 번호 변경</p>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p>원사업 및 투자</p> <p><u>21. 패션, 잡화, 귀금속의 제조 가공, 수출입 도소매업 및 투자</u></p> <p><u>22. 통신판매관련 사업 및 투자</u></p> <p><u>23. 신생에너지 관련 사업 및 투자 (신 설)</u></p> <p><u>24. 위 각항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도소매</u></p> <p><u>25. 전기 각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 판매</u></p> <p><u>26. 전기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u></p> <p>(신 설)</p>	<p>원사업 및 투자</p> <p><u>12. 패션, 잡화, 귀금속의 제조 가공, 수출입 도소매업 및 투자</u></p> <p><u>13. 통신판매관련 사업 및 투자</u></p> <p><u>23. (삭 제)</u></p> <p><u>14. 의약외품의 제조 및 판매</u></p> <p><u>15. 동물용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u></p> <p><u>16.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u></p> <p><u>17. 미용기기 제조 및 판매</u></p> <p><u>18. 음·식료품 및 음·식료품 첨가물의 수입, 제조, 가공 및 판매</u></p> <p><u>19. 화장품 도·소매업</u></p> <p><u>20. 화장품 원부자재 도·소매업</u></p> <p><u>21. 의약품 원부자재 도·소매업</u></p> <p><u>22. 연구개발서비스</u></p> <p><u>23. 기술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의 용역과 기술의 제공</u></p> <p><u>24.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u></p> <p><u>25.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공동활용,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u></p> <p><u>26. 위 각항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도소매</u></p> <p><u>27. 전기 각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 판매</u></p> <p><u>28. 전기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u></p>	
<p>(신 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p> <p><u>이 정관은 제64기 정기 주주총회에 서 승인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u></p>	<p>-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p>

제2-2호 : 액면분할을 위한 액면가액 변경의 건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제6조 (1주의 금액)	제6조 (1주의 금액)	- 액면분할을 위한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u>금500원</u> 으로 한다.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u>금100원</u> 으로 한다.	액면가액 변경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6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제2-3호 :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정비의 건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 ④ (좌 동) ⑤ <u>회사는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u>	- 표준정관준용(개정상법 반영)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u> 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u>그</u>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u> 를 제출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준용(개정상법 반영)
제25조(이사수와 선임방법) ① 이 회사에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u>사외이사</u> 는 이사총수의 <u>4분의 1</u> 이상으로 하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 ③ (생 략) ④ <u>사외이사</u> 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 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사외이사</u> 를	제25조(이사수와 선임방법) ① 이 회사에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u>독립이사</u> 는 이사총수의 <u>3분의 1</u> 이상으로 하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 ③ (좌 동) ④ <u>독립이사</u> 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 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독립이사</u> 를	- 표준정관준용(개정상법 반영)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조의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좌동)	- 표준정관준용(개정상법 반영)
(신설)	부칙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u>제17조, 23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u>제25조, 제29조의3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u>	-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제2-4호 :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제42조(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u>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u> ④ ~ ⑤ (생략)	제42조(이익배당) ① ~ ② (좌동) ③ <u>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④ ~ ⑤ (좌동)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 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u>이 정관은 제6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u>	-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제2-5호 : 중간배당 관련 변경의 건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42조2(중간배당) (신 설)</p>	<p>제42조2(중간배당) <u>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상법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u> <u>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u>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u> <u>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u> <u>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u> <u>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u> <u>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u> <u>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u> 	<p>- 상법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p>
<p>(신 설)</p>	<p>부 칙 제1조(시행일) <u>이 정관은 제6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u></p>	<p>-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p>

[별첨 2]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용준	1962.04.03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용준	(주)한국화장품제조 부회장	2010년 ~ 현재	(주)한국화장품제조 대표이사 부회장	보통주 498,106주 보유
			한국화장품(주) 대표이사 부회장	
			(주)더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부회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용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본 후보자는 당사의 대표이사직을 다년간 수행하여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으며, 회사의 지속성장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